

10.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 1. 심사경과

- 발의일자 : 2023년 1월 27일
- 발의의원 : 김정옥, 이태손, 하병문, 이영애, 전경원, 김지만, 김재우, 김원규, 조경구, 윤영애, 이성오, 육정미, 허시영, 박소영 의원
- 회부일자 : 2023년 1월 31일
- 상정일자 : 제298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경제환경위원회(2023년 2월 10일), 수정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김정옥 의원)

- 개정 이유
  -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통해 활발한 경제활동을 유도하고자, 소상공인 보호사업의 하나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사업을 신설하고,
  - 그 밖에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보호사업을 구분하여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조례의 의도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주요내용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
  - 소상공인 '지원사업'과 '보호사업'의 구분(안 제6조부터 제6조의2까지)
  - 소상공인 보호사업으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신설(안 제6조의2 제4호)

### 3. 검토보고 요지(보고자 : 전문위원 김제관)

#### □ 제안 취지 및 적법성 검토

- 본 개정조례안은 지역 소상공인<sup>17)</sup>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사업을 지역 소상공인 보호 사업 항목으로 신설하고, 그 밖에 소상공인 '보호사업'과 '지원사업'의 내용을 구분하여 조례 조문을 정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소상공인기본법」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의 취지와 타시도 조례 입법례<sup>18)</sup>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때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소상공인기본법」**

제24조(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의 생산성 제고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소상공인의 복지 수준 향상에 필요한 시책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7) 본 조례의 '소상공인'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제1항의 정의에 따르는 것으로, 업종별로 상시근로자의 수가 '①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 10명 미만, ②그 외의 업종 : 5명 미만'인 소기업을 말하는 것임.

18) < 정부 및 타 특광역시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현황 > (22년도 기준)

- 정 부 : 고용보험료의 20~50%, 1인 연154,440원 ~ 280,800원(최대 5년)
- 특광역시 : 고용보험료의 30~50%, 1인 연147,420원 ~ 273,780원(최대 3~5년)

지역	지원율(%)	기간(최대)	도입	근 거
서울	30	5년	'19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기본 조례
부산	30	3년	'20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인천	미지원	-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광주	50	3년	'21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대전	30	3년	'19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울산	30	3년	'21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울산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 조례

□ 주요내용

- 안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는 현행 조례 제6조의 소상공인 지원사업 각호 중 내용상 보호사업의 성격이 강한 신용보증 지원(제5호), 공제 사업 등 지원(제7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제11호) 사업을 개정 조례안 제6조의2(보호사업)의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고, 그 외의 지원사업 조문 번호를 순서에 맞게 정리하는 것임.
- 안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 현행 조례 제6조제5호, 제7호, 제11호의 내용을 각각 이기하고, 추가로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였으며(제4호),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음(제5호).
  -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을 지원하는 ‘자영업자 고용보험’ 제도는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가 본인(사업주)의 희망에 따라(임의가입) 고용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여 폐업 시 실업급여, 직업능력개발 등을 지원하는 제도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이하 생략 -

- 정부는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해 고용보험 가입 진입 장벽을 낮추고자 2018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보험료의 일부(20% ~ 50%)를 지원해 왔으며, 특·광역시

중에서는 인천과 대구를 제외한 지자체가 정부 지원에 더하여 30% ~ 50%의 고용보험료를 추가 지원하고 있음.

- 이러한 추세에 따라 대구시에서도 지역 소상공인의 고용보험 가입 증진을 위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입법 타당성이 높다 할 것임.
- 다만, 다른 지자체의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례를 살펴보면, 고용보험료 지원과 함께 산재보험료까지 지원하는 경우가 다수 있고<sup>19)</sup>, 지역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도모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고려하면, 안 제6조의2제4호의 ‘고용보험료 등’의 범위가 ‘고용보험료’만으로 한정적으로 해석될 우려가 있으므로, 좀 더 명확하게 범위를 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19) < 타 지자체 소상공인 산재보험료 지원 현황 > (22년도 기준)

지역	지원율(%)	기간(최대)	근 거
부산	30~50	3년	「부산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보호사업) 6. <b>고용보험료</b> 등의 지원
광주	50	3년	「광주광역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8조(지원사업) 8.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아14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b>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b> 지원
대전	50	3년	「대전광역시 고용보험료 지원조례」 제6조(소상공인 지원사업) 7.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공제사업 및 <b>사회보험료 지원</b>
강원	50	-	「강원도 소상공인 지원 조례」
경남	30~50	3년	「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사업) 8. 소상공인에 대한 사회공제 및 <b>사회보험료 등 지원</b>

\* 서울, 인천, 울산, 경기 등 산재보험 미지원

**\* 수정안 예시**

개정조례안	수 정 안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 3. (생략) 4. <u>고용보험료</u> 등의 지원  5. (생략)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개정조례안과 같음)  1. ~ 3. (개정조례안과 같음) 4. 「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u> 」에 따른 <u>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u> 의 지원 5. (개정조례안과 같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보험료) ① 보험사업에 드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보험료를 징수한다. <개정 2010. 1. 27.>

1.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 (이하 생략)

**□ 검토결과**

- 정부는 최근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이라는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종전까지 1인 자영업자에게만 일부 지원해 왔던 고용보험료 지원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모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확대하였음<sup>20)</sup>.
- 또한, 각 지자체 차원에서도 정부 지원과 별개로 고용보험료를 비롯한 사회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지자체가 늘어나고 있는 등 정책적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노력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20)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8. 23. 일부개정)(시행 2022. 11. 24.)

-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료의 지원은 소상공인의 사회 보험 진입장벽을 낮추고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지역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소상공인의 적극적인 경제활동을 유도해 지역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정책적으로 지원할 타당성이 있음.
- 특히, 대구시는 코로나 사태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의 수가 지속적인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바<sup>21)</sup>, 고용보험 가입을 통한 안전장치 마련의 필요성이 더욱 높다고 할 것임.
- 다만, 안 제6조의2제4호에서 ‘고용보험료 등’의 정의와 범위가 다소 불명확하므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험료’ 등으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대구시는 조례 개정을 계기로 지역 소상공인이 부득이한 폐업 또는 산업재해로 인한 위기에 처하더라도 사회보험을 통해 최소한의 생계유지책과 재기 요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의 시행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임.

21) 대구경제동향(2022. 11.) (대구광역시 / 대구경북연구원)

#### 임금근로자수 및 자영업자수

(단위 : 천 명, %)

구분	2021	2022						
	연간	04	05	06	07	08	09	10
임금	931	954	970	968	979	978	974	970
근로자	(7.4)	(2.6)	(2.2)	(2.1)	(3.7)	(3.9)	(2.2)	(2.3)
자영	251	247	247	241	238	236	238	237
업자	(-7.7)	(-0.7)	(-0.7)	(-3.1)	(-5.6)	(-6.4)	(-3.6)	(-5.8)

\* ( )안은 전년동기 대비 증감율

## 참고 1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현황

### □ 대구시 1인 자영업자 업종별 고용보험 가입현황(근로복지공단)

전국	대구	도소매	음식업 숙박업	제조업	운수업 창고업	건설업	전문 서비스	교육 서비스	금융 보험업	기타
28,680	1,410	427	251	178	96	33	33	111	4	277

### □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및 대구시 지원액(안)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기준보수액	182만원	208만원	234만원	260만원	286만원	312만원	338만원
고용보험 월 보험료	40,950원	46,800원	52,650원	58,500원	64,350원	70,200원	76,050원
정부 지원액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475원	23,400원	15,795원	17,550원	12,870원	14,040원	15,210원
	50%		30%		20%		
<b>대구시 지원액 안 (30%)</b>	12,285원	14,040원	15,795원	17,550원	19,305원	21,060원	22,815원
자영업자 실 납입액	8,190원 (20%)	9,360원 (20%)	21,060원 (40%)	23,400원 (40%)	32,175원 (50%)	35,100원 (50%)	38,025원 (50%)

### □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등급별 가입 현황 및 보험료 지원액 추계 (단위: 명, 만원)

구분	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가입자 수	1,410	499	307	96	166	77	39	226
보험료지원액(연간)	26,802	7,356	5,172	1,820	3,496	1,784	986	6,188

## 참고 2

## 타 지자체 자영업자 사회보험료 지원 현황(2022년 기준)

지자체	구분	지원 시작일	지원규모	지원내용
서울시	고용	'19. 1. 1.	750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30%(5년)
부산시	고용	'20. 1. 1.	400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30%(3년)
	산재			• 1~ 4등급: 보험료 50%(3년) • 5~ 8등급: 40%(1년) • 9~12등급: 30%(1년) ※ 22년 지원사업 확대(자영, 중소 모두) - 1인 → 상시 5인미만 사업주까지 확대
광주시	고용	'21. 9. 1.	67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50%
	산재			• 1~12등급: 보험료 30~50%
대전시	고용	'19. 1. 1.	80백만원	• 1~7등급(신규): 보험료 30%(3년)
	산재	'19. 1. 1.		• 1~12등급(신규): 보험료 50%(3년)
울산시	고용	'21. 1. 1.	100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30%(3년 최대 4등급 기준)
경상남도	고용	'18. 7. 1.	279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30%(3년)
	산재	'20. 1. 1.	174백만원	• 1~ 4등급: 보험료 50%(3년) • 5~ 8등급: 40%(3년) • 9~12등급: 30%(3년)
강원도	고용	'19. 1. 1.	4,800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50%
	산재			• 1~12등급: 보험료 30~50%
경기도	고용	'20. 1. 1.	690백만원	• 1~7등급: 보험료 30%(3년)
충청남도	고용	'20. 1. 1.	130백만원	•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50%

## 4. 질의 및 답변 요지

질의요지	답변요지
<p>○ 안 제6조의2제4호에서 ‘고용보험료 등’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고용보험료에 더하여 산재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대구시에서도 향후 산재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을 좀 더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p>	<p>○ 동의함.</p>

## 5. 토론요지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함.

## 6. 수정안 요지

- 제6조의2제4호 본문 중 “고용보험료 등”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 7. 심사결과

- 수정안가결(출석위원 전원찬성)

## 8. 소수의견 요지

- 해당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해당 없음.

## 10. 첨부서류

- 위원회 수정안 : [붙임1]

[붙임1] : 위원회 수정안

##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동의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의2제4호 본문 중 “고용보험료 등”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로 한다.

## 수정안 조문대비표

개 정 안	수 정 동 의 안
<p>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li> <li>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li> <li>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li> <li>4. <u>고용보험료</u> 등의 지원</li> </ol> <p>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p>	<p>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개정안과 같음)</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 3. (개정안과 같음)</li> <li>4. <u>「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u>의 지원</li> <li>5. (개정안과 같음)</li> </ol>

대구광역시조례 제 호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8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6호부터 제8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12호를 제9호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소상공인 보호사업) 시장은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확충 및 삶의 질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대구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
2.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공제사업 등 지원
3.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른 전통시장 화재공제의 가입 지원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지원
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 계 법 령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 7. 26.>

[본조신설 2016. 1. 27.][제12조의3에서 이동 <2021. 7. 7.>]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자영업자에 대한 특례)** ①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영업자(이하 “자영업자”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받아 자기를 이 법에 따른 근로자로 보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도 본인이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려는 경우에는 계속하여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본다.

③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보수액은 자영업자의 소득, 보수수준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④ 자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보험가입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혜택수준을 고려하여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야 한다.

⑤ 자영업자는 제4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을 다음 보험연도에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직전 연도의 12월 20일까지 제3항에 따라 고시된 보수액 중 어느 하나를 다시 선택하여 공단에 보수액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13조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자영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대한 고용보험료는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선택한 보수액에 제7항에 따른 고용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월(月)의 중간에 보험관계가 성립하거나 소멸하는 경우에는 그 고용보험료는 일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개정 2021. 1. 26.>

- ⑦ 자영업자에게 적용하는 고용보험료율은 보험수지의 동향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에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료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고용보험료율의 결정 및 변경은 「고용보험법」 제7조에 따른 고용보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⑧ 제6항에 따른 고용보험료는 공단이 매월 부과하고, 건강보험공단이 이를 징수한다.
- ⑨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매월 부과된 보험료를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⑩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가 자신에게 부과된 월(月)의 고용보험료를 계속하여 6개월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납부한 고용보험료에 해당되는 피보험기간의 다음날에 보험관계가 소멸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고용보험료를 낼 수 없었음을 증명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1. 15.>
- ⑪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 신청·승인 및 보험료의 부과·납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 ⑫ 자영업자의 고용보험관계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주”는 “자영업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1.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에 관하여는 제5조제5항(같은 항 후단은 제외한다)·제7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준용한다.
  2.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과납액의 증당과 반환, 고용보험료와 연체금의 징수·독촉에 관하여는 제23조제1항·제2항·제4항, 제25조, 제26조의2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3.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이 법에 따른 그 밖의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는 제32조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 7. 21.]